

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연월일	2026. 7. 27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6. 7. 27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위원회 운영상 “간사”로 표기된 직책을 실제 수행 기능에 부합하는 “부위원장”으로 정비하여, 조례의 용어 사용을 통일하고 직책에 따른 책임과 위상을 명확히 하려함.

2. 주요내용

- 제53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, 제65조3항(위원회 회의록)
 -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5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정한다.	제53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 -- -----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 --.
제65조(위원회 회의록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<u>간사가</u> 서명·날인한다.	제65조(위원회 회의록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부위원장</u> <u>의</u> -----.